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59

발의연월일: 2025. 5. 20.

발 의 자:김종민·김영배·차규근

윤종오 · 황운하 · 전종덕

한창민 • 허성무 • 맹성규

서삼석 • 박수현 • 용혜인

천하람 · 성일종 · 이성권

민병덕 · 김성원 의원

(179]

### 제안이유

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「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'헌 법개정특별위원회'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(안 제45조의2 신설).

# 주요내용

- 가.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(안 제45조의2제1항).
- 나.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,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(안 제45조의2제2항).

- 다.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국회의원 총선 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(안 제45조의2제3항).
  - 라.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(안 제45조의 2제4항).
  - 마.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(안 제45조의2제5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055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2(헌법개정특별위원회) ①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.
  - ②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.
  - ③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④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  - 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

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은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  - ②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의2(헌법개정특별위원회)
	①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
	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
	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
	특별위원회를 둔다.
	②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
	수는 30명으로 한다. 이 경우
	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
	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
	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
	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
	<u>선임한다.</u>
	③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
	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국
	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
	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
	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
	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
	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
	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
	로 한다.
	④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
	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

-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의
  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
 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
  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
 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
  한다.
-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